

#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08
----------	-----

2019년 3월 5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상진 의원(찬성의원 12명)
- 나. 제안일 : 2018년 12월 31일
- 다. 회부일 : 2019년 1월 7일
- 라. 상정일 :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9년 3월 5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상진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,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관·관리되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하여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(안 제10조제1항 신설).
-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은 본인의 승낙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함(안 제 10조제2항 신설).
-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규정함(안 제10조 제3항 신설).
- 시장에게 홈페이지 수록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제4항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9. 1. 11. ~ 1. 18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관·관리되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의무 및 본인의 승낙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·배포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(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),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(안 제10조제3항), 개인정보 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4항).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10조(개인정보 보호)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</li> <li>2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</li> <li>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</p>

- 입법취지는 상위법령(「개인정보 보호법」)에 따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- 동 개정안은 서울시 관리대상 홈페이지가 164개(서울시 및 공사출연기관 포함)에 달하고, 1일 평균 3만 9천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각심과 보안대책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

〈 서울시청 홈페이지 관리 현황(2019년 기준) 〉

구분	관리대상 홈페이지		
홈페이지 관리대상	141개 (국문 121, 외국어 20) ※ 공사출연기관 운영 23개		
홈페이지 방문자수(1일 평균)	2017년	2018년	2019년
	29,596명	33,248명	38,220명

- ※ 최근 3년간 서울시 정보통신사이버 침해사고 현황건수는 2건(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)이 발생함(출처: 2018년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583쪽).
- 또한,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총괄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, 각 실국별로 홈페이지를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바, 인터넷 기반 환경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

〈 서울시 홈페이지 관리 체계 〉

○ 스마트도시 정책관

- [운영] 市 홈페이지의 포털 역할을 하는 대표홈페이지(www.seoul.go.kr)와 빅데이터, GIS 등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 홈페이지 등 국문 홈페이지 18개, 회원, 게시판, 검색 등 전 기관에서 활용하는 홈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을 운영.
- [총괄관리] 홈페이지 신설(중복성 검토, 오픈심의), 통·폐합 검토를 통한 총량제 준수, 웹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,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등 서울시 홈페이지 정책을 총괄.

○ 각 실·국·본부·사업소

-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시민참여를 위하여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,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만족도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.
  - ※ 복지포털, 일자리포털, 평생학습포털, 민주주의서울 등
  - ※ 외국어 홈페이지는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총괄 관리

※ 서울시 홈페이지는 새소식, 입찰공고, 고시공고, 채용공고, 시청안내 등 시정 전반의 소식과 복지, 경제, 문화, 교통 등 8개 분야의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, 서울시 홈페이지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,

- 응답소, 민주주의서울, 소셜시장실 등 시정참여 홈페이지와 일지리포털, 정보소통광장, ETAX 등 유용한 정보제공 홈페이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연결 배너를 제공하는 등 시 홈페이지들의 포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○ 다만, 안 제10조 제4항중 “개인정보자료”는 상위법령인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으로써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암호화 대상인 “개인정보”로의 수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--

○ 한편,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,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데이터의 활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바,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상위법령(「개인정보보호법」)의 개정 동향과 반영여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2018년 이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과 관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계류중에 있음.

※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국회에 상위법령(「개인정보보호법」)의 일부개정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으므로,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, 일부 용어에 대한 수정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재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상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30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2월 31일

발 의 자 : 김상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김경우, 김광수,  
김기대, 김달호, 김생환,  
김혜련, 문영민, 박기열,  
송재혁, 이세열, 조상호,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,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관·관리되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하여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(안 제10조제1항 신설).
- 나.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은 본인의 승낙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제2항 신설).
- 다.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규정함(안 제10조제3항 신설).
- 라. 시장에게 홈페이지 수록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제4항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참조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개인정보 보호)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
2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
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10조(개인정보 보호)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</li> <li>2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</li> <li>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</p>